

AIG 존해모엄 모상과 수소	. (우) 0/326 서울특별시 영등3	느구 국제금융	도 10 국제금융센터	I WO I	IFC 26층 AIG온하	모염   lel : 1544	4-2/92 Fax:0.	2-2011-46	07		
■ 피보험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번호			-			
연 락 처				직	장명/하시는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	부예아니오	
■ 보험금 수익지	· 정보 및 안내 받을	분 인적/	<b>사항</b> (피보험자	-보험	험금수익자 동	일시 상동에	∨ 표시)				
보험금 수익자 (보험금 수령인)		□상동	주민번호			-		□상동	관 계		
보험금 수익자의 실제소유자 여부	_ 예 _ 0	니오	보상 안내 받을	분	□상동 연락	·처		□상동	관 계		
	체가 다수인 경우, 『보험금 청구	그를 위한 필스	수 동의서』전원 서당	명 기재	l 부탁드립니다.						
	사고유형에 V 표시) 여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 は명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는 모든 보험금을 지	[급해 .	드리며 이하 세부	항목들을 상세히	히 체크 기재시 5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	이 가능합니다.	
117054	□ 질병 신체 내부요인으	□ 질병 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 상해 급			급격 우연한 외부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우			추가청구시 □ (V 표시 바랍니다.)			
사고유형	□ 재물 피보험자의 재물(	에 손해가 밝	발생한 경우 □ □	배상	제3자의 재물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사고번호(추가접수시 기재)		
세부유형	□ 입원 □ 통원 □	수술	□진단 □사	망	□장해 □	운전자 [	□치과 치료				
사고(발병) 일시		년	월 일	틸 (	시 분	)			사고장소(	질병제외)	
사고경위											
(내원경위)									진대	단명	
치료병원					진료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처리 : 🗆	자동차보험 처리 : 🗌 예 🔲 아니오			해당 보험사			이륜차 탑승여부: 🗌 예 🗌 아니오			
	본인차량번호 :			탑승위치	☐ 운 <sup>;</sup>	□ 운전자 □ 조수/		석 □ 뒷자리 □ 보행중 □ 기타			
실손통원의료비 청구시	작성(통원의료비 3만원 초과	~10만원 이	하 금액인 경우만	해당)	질병분류코	≣					
	대한 경우, 약관조항에 의거 보험 <b> 실 계조  (보험금 수익자</b>					<u></u> 민감증명서를 기	데출하셔야 합니	· 다.)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수익자주소						연 락 처					
■ <b>위임장</b> (보험금	수익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게 보험금 :	지급을 원하는 경	우에민	<u>난</u> 작성하시기 비	랍니다 사!	망보험금 청구	시 별도의	제공된 위임	임장 작성)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del>'</del> 임하며, 이에 대하여는 일						— .				
위임하는 분 성명	: (인)	주민번호	Ē				위임받는 분	분과의 관	계		
위임받는 분 성명	: (인)	주민번호	Ē				위임하는 분	분과의 관	계		
■ 확인사항											
• 위 기재한 보험금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통하여 보상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기일 등) 안내 받고 숙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다수인 경우, 보험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b>보험금 청구서와 청구서류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b> 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친권자(후견인)가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고의사고,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은 보험금 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를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선인자 :	녀 원		인 / 부허글	1 수(	이자! (내리초	1구시 대리	ol) ·			(서명)	

#### 1.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홈페이지 www.aig.co.kr에서 참조 가능) 참조하셔서 관련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기 우편 또는 100만원 이하 서류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대표 번호가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가능계약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센터(1544-279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월요일~금요일 09~18시)
- 증권 재발행을 원하시는 경우도 회사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는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님은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3.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 4. 의료심사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회사 가 동의 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청구 당시에 상급종합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7.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 지급안내문 또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aig.co.kr)또는 고객센터(1544-2792)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예상 지급기일

• 상해 · 질병사고의 예상지급일은 최종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이며, 배상책임손해와 재산손해의 예상 지급일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 이내입니다.

### 9.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지급 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44-2792)로 가능합니다.
- 단, 보험금 지급 관련 개인정보 활동 또는 의료 심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0.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단, 2015.0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은 2년)

#### 11. 직접 청구권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2.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당사 소비자 보호실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우편접수: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소비자보호실
- ※ 전화상담: 소비자보호실 (02) 2260-6939 및 고객센터 (1544-2792)

### 13.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센터 (1544-2792)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G 손해보험 보상과 주소: (우)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 동의	□ 동의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잔존물대위, 구상관련 업무 포함) 및 보험 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등
- ·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등
- · 금융거래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업무

###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등[경찰,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 "거래종료"라 함은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당사와의 모든 거래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다만, 만기 등 사유 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 중 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 중 인 경우는 거래 종료 로 보지 않음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 수탁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 동의	□ 동의			

###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 ·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3.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 동의	□ 동의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

정업체,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자동차 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당사의 국내, 국외 계열사 및 수탁업체 등)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ㆍ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 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 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제공핰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 이용기간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ai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 등)를 처리(수집·이용·제공 등)하고 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질병 · 상해정보 등) 처리	□ 동의	□ 동의
고유식별정보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 처리	□ 동의	□ 동의

-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 한쪽에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다수인 경우(다수의 수익자 및 다수의 상속인 등) 아래 서명란에 전원 서명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웤

일

 피보험자
 서명 :

 보험금 수익자
 서명 :

지명 :

 대리인
 서명 :